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품등 수수의 금지 대상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 등〉

■ 김영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48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가상자산을 ‘금품등’ 정의 규정에 추가	3
2. 부정청탁 행위유형 추가	8
3.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자를 공직자등의 배우자 외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으로 확대 및 처벌 규정 신설	14

I. 제안경위

1. 제출자 : 김영환의원 등 11인
2. 제출일 : 2024. 9. 30.
3. 회부일 : 2024. 10.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품등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은 재산적 이익에 해당함에도 공직자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고,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시기 등을 앞당기는 행위, 행정 집행의 시기·순서 등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에게도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엄격하게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금품등에 포함하고,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시기 등을 앞당기는 행위, 행정 집행의 시기·순서 등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 추가하도록 하며, 금품등 수수의 금지 대상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5항 등).

Ⅲ. 검토의견

1. 가상자산을 ‘금품등’ 정의 규정에 추가

□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금품등’의 정의 규정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u>유가증권</u> ,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다. (생략) 4. (생략)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 ----- -----. 가. ----- <u>유가증권, 가상자산</u> (「 <u>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 ----- ----- ----- 나.·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제1조에서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¹⁾ 제8조에서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²⁾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벌(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³⁾ ‘금품등’은 벌칙⁴⁾의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

구성요건 중 하나임.

- 법률에서 형벌을 규정할 때에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 대상 행위, 행위 주체 및 형사처벌의 정도를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⁵⁾

- 현행법은 “금품등”의 정의를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②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음.⁶⁾

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4) 벌칙은 사회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인 범죄에 부과하는 형사벌과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의 상대방에게 과하는 제재로서의 행정벌로 구분되는데, 행정벌은 처벌의 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됨. 행정형벌은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 의무위반자에 대해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刑)을 과하는 것으로 「형법」 제8조에 따라 형법총칙이 적용되며, 행정질서벌은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법제기준과 실제 2024」,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p. 753

-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를 말함.⁷⁾

○ 대법원도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⁸⁾

○ 「공직자윤리법」은 2023년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킴.⁹⁾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 사. (생략)

8)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9)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 개정안은 현행법상 ‘금품등’의 정의규정에 가상자산을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이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금품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실무를 운용하고 있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가상자산 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상자산이 ‘금품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실무례도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금품등’에 포함 여부는 구성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문제이므로, 「공직자윤리법」과 같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금품등’ 개념이 보다 명확해져 ‘가상자산’이 미포함된다는 오해 소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2. 부정청탁 행위유형 추가

□ 개정안은 행정 집행의 시기·순서 등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유형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 ----- ----- ----- ----- -----행위 또는 그 지급순서나 시기 등을 앞당기는 행위
9. ~ 14. (생략)	9. ~ 14. (현행과 같음)
<신설>	15. 행정 집행 시기, 순서 등을

<신 설>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생략)	<u>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u> 16. <u>발표되지 아니한 부동산·자원 개발 계획, 산업·금융 정책 등 유가증권시장이나 환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u> 17. -----제16호까지의----- ----- ----- ----- ----- ----- ②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에게는 형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음.
- 각 호의 부정청탁 행위는 모두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서 벗어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부정청탁 대상 업무 등(법 제5조제1항 각 호)>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

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u>법령을 위반하여</u>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u>법령을 위반하여</u>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u>법령을 위반하여</u>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u>법령에</u>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u>벗어나</u>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현행법은 부정청탁에 대하여 명문의 법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2013년의 초기 정부(안)에서는 부정청탁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라고 규정하였으나, 논란이 되어 아예 구체적인 금지행위 열거방식으로 규정방식을 바꾸면서 정의규정이 실제 시행 법률에서는 제외된 바 있음.¹⁰⁾

- 동 법의 ‘부정청탁’ 용어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부정청탁”이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관련 판례도 있으며,

10) 박균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행정법적 연구 - 부정청탁 금지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56호, 2016. 10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구성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법령의 입법취지 등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따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¹¹⁾

□ 개정안은 ①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지급순서나 시기 등을 앞당기는 행위, ② 행정 집행 시기, 순서 등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 ③ 발표되지 아니한 부동산·자원 개발 계획, 산업·금융 정책 등 유가증권시장이나 환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부정청탁의 유형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다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시기, 행정 집행의 시기·순서 등은 행정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변동가능성이 높은 사항으로서, 별도의 법령 위반 또는 대가를 약속 받지 않는 한 일정 범위의 자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11)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결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등]
<결정요지>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은 부정청탁의 의미에 관하여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입법과정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구성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정청탁금지조항은 통상적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와 규칙도 법령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상규’라는 개념도 형법 제20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법원이 그 의미에 관해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으므로, 부정청탁금지조항의 사회상규도 이와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부정청탁금지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그 의미내용이 명백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볼 수도 있음.

-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입법할 경우, 현행 부정청탁 행위유형 대부분이 ‘법령 위반’을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행위유형 추가 시 ‘법령 위반’을 필요적 구성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시기, 행정 집행의 시기·순서 등은 별도의 법령 위반이 없는 한 일정 범위의 자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자를 공직자등의 배우자 외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으로 확대 및 처벌 규정 신설

- 개정안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신고의무 부여, 반환 또는 거부 의사 표시 의무화, 수사기관 통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 하면서,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부과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 제22조,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생략)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배우자, 공직자등 및 그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이하 “공직자등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은----- ----- ----- ----- ----- -----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	⑤ -----

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
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1. (생략)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
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
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
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
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
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
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

-----배우자등에게

-----.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

1. (현행과 같음)

2. -----공직자등의 배우
자등이-----

② -----

-----공직자등의 배우자등
이-----

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
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
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
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
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
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
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
· 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
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직자등의 배우자등이-----

-----.

⑤ -----
-----공직자등의 배우자등이-----

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
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
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
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
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생 략)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
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
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
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
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

⑥ (현행과 같음)

⑦ -----

-----배
우자등이-----

-----배우자등으로-----

-----.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벌칙) ① -----

-----.

1. (현행과 같음)

2. 공직자등의 배우자등이-----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 5. (생략)

공직자들의 배우자등이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공
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
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의 배우자등. 다만,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등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
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
우는 제외한다.

3. -----

공직자
등의 배우자등에게-----

4. · 5. (현행과 같음)

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⑦ (생략)

-----.

-----.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의 배우자등. 다만,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등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

-----공직자
등의 배우자등에게-----

⑥·⑦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는 제반 규정을 두고 있음.¹²⁾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 그리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¹³⁾ 공직자등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등 사실을 안 경우 신고 및 반환·거부 의무를 부여함.¹⁴⁾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제한방식에 있어서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공직자등이 배우자의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신고 의무를 부담토록 함으로써 법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고 신고·반환 의무 등을 부여한 것은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 및 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¹⁵⁾

○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9조제1항제2호 중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 등 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배우자를 통한 금품등 수수의 우회적 통로를 차단하는 한편, 신고라는 면책 사유를 부여’한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¹⁶⁾한 바 있음.

□ 그런데,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및 자신과 배우자에 관련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15) 법률 제정 당시 논의 과정(제331회 국회 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2015년 3월 3일)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을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일부 위원의 지적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을 우회해서 어떤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막아 보자라는 취지’이며, ‘배우자가 돈 받은 것이 독자적으로 어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상정을 할 수가 있다’면서 배우자에 대한 이 법 적용 필요성을 주장함.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등 결정(2016.7.28. 선고, 2015헌마23)

따로 처벌·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공직자등 외의 사람(배우자)에게 적용되는 현행법 규정>

조항	내용
제8조제4항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함
제8조제5항	누구든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함
제9조제1항제2호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함
제9조제2항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함
제9조제4항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제9조제5항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참여 중지 등 조치 가능
제9조제7항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함

- 개정안은 현행법상 배우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직무 관련 금품등 수수 금지, 신고의무 부여, 반환 또는 거부 의사 표시 의무화, 수사 기관 통보 등에 관한 규정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혈족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포함하여 2촌 이내 혈족까지 위의 규정 위반 시 처벌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 이는 공직자등 본인 및 배우자 외에 2촌 이내 혈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비위행위를 차단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은 경우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우자와 같이 이 법의 규율 대상에 편입한다면 가족을 통한 비위행위를 더욱 강력히 차단하여 공직의 청렴성을 일정 부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의 경우 공직자등 및 그 배우자와 세대 및 경제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공직자등 본인과의 상호 관계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신고조항을 합헌 결정하면서 ‘본인과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¹⁷⁾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의 경우에도 배우자와 동일한 정도로 규제와 제재를 하여야 할 만큼 경제적 긴밀도가 배우자와 같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그리고 현행법에서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¹⁸⁾의 형태는 상당히 다양한데, 2촌 이내 혈족의 경제·사회 활동 내 사적 거래 행위와 공직자등의 직무와의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음에도 규제 및 제재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할 경우, 2촌 이내 혈족¹⁹⁾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의 정도가 과잉금지 원칙의 기준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에 대해서도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등 결정(2016.7.28. 선고, 2015헌마23)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19)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이 법에서 규율하는 “공직자등”은 약 240만 명으로,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의 수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처벌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직수행의 청렴성·공정성 강화라는 기대 효과에 비해, 수범자의 확대 범위 및 제한 범익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를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무위원회의 제정안 원안에는 공직자등 본인 외에 이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주체를 ‘공직자등의 가족’으로 명시하였다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수정하여 제정법률에 반영한 바 있음.²⁰⁾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공직자등 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등 부패실태 및 심각성, 국민인식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이 자신의 직장이나 사적 모임 등과 같이 통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제공받는 식사, 선물 등이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인지 여부를 일일이 판단토록 하는 것은 개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0) 2012. 8. 22. 청탁금지법 입법예고안에서 ‘공직자의 가족(민법 제779조의 가족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었고, 2013. 7. 8. 법제처 법제심사 시 ‘공직자의 가족은 그 공직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수정된 바 있으며, 2013. 8. 5.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공직자의 가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수정되었고, 2015. 1. 8. 국회 정무위에서 ‘공직자등의 가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수정되었으며, 2015. 3. 3. 국회 법사위에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현행법과 동일하게 수정됨.

문 의 처
02)6788-5110